11조는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 성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 동안 매우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아직 그 도입 자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매우 의미있고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부처의 반발,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이견, 그리고 지역간 재정 불균형의 확대를 우려한 목소리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대안이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일본형의 지방소비세가 논의되고 있으며, 국세청이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일정율(예: 10%)을 소비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입방안들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세수를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기준으로 지역별 도소매판매액이나 최종소비지출, 또는 인구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논거는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우려이다. 세수의 지자체 배분과 관련하여 소비액이나 인구 등 현재 제시되고 있는 어떠한 배분기준을 사용하더라도 재원의 많은 부분이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 배분되게 됨으로써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 평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다. 먼저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소비세는 응익 원칙에 부합하고 경제적 성과와도 연계가 가능하다. 즉,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지방공공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활동의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세 자치단체가 과세하는 것은 응익원칙에 부합하며, 지역경제활동의 성과가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즉, 현재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소비과세를 확충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장성 높은 실질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8:2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는 자치단체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분권화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 지방소비세란 점이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반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소비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수의 대부분이 수도권·대도시에 분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동세적 성격으로 자주재원으